

8. 수업 및 학업평가에 관한 내규

제정 : 1977. 3. 1.

개정(제9차) : 2014. 12. 3.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장(수업)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료학점)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말하며, 대학원 학칙 제15조에 의한다.

제3조(보충과목 이수학점) 타 전공자의 보충과목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은 학과 내규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 단, 보충과목의 이수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.

제4조(보충과목 이수면제) 타 전공자의 보충과목 이수면제에 관한 사항은 학과 내규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
제5조(수강과목의 철회)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(수업일수 3분의 2선 이내)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, 지도교수, 대학원 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.

② 수강과목 철회 후의 잔여신청과목의 최저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.

④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, 성적표상에는 “W”(Withdraw)로 기재된다.

제6조(평가보류 제도) 국내·외 석학 및 전문가 초청 집중강의 및 현장실습 과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보류 제도를 적용한다.

① 대학원 학사일정의 성적보고 기간과 위 과목의 운영기간과의 불일치로 성적보고 기간 내에 성적평가가 불가능한 경우, 교수는 “I”(Incomplete) 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평가보류 제도에 의하여 “I”학점을 부과한 교수는 해당학기 종료일까지 사후 성적평가 결과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학사일정에 따른 성적보고 기간에 보고된 “I” 학점은 사후 평가된 성적으로 대체되어 학적부에 기재된다.

④ 대학원에 사후 성적평가 결과를 해당학기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“I” 학점은 자동으로 “F” 학점으로 기재된다.

⑤ 평가보류 제도의 적용은 해당학기에 개설된 과목에 제한한다.

제7조(재수강 제도) ① 성적평가가 “F” 인 과목 또는 등급의 상향을 원하는 과목은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다.

②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 성적 평가에 재수강 표시를 하며, 이전에 불량으로 평가된 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된다.